

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상업등기법 제17조의 전자증명서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경우의 발급수수료를 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전자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매 건마다 3,000원으로 정함(안 제5조의8제1항 단서 신설)

4.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8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상업등기법 제17조제3항, 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5항에서 정한
사용용도가 제한되는 경우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3,000원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<의안 소관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	
연락처	(02) 3480-6043